

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편성 현황

□ 근거조항

-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호
-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
-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(2015.12.22.)

□ 예산편성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구 분	2015학년도(A)	2016학년도(B')	증감(B'-A')	비고
세입예산액(A)	32,250,617	31,719,213	△531,404	
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편성액(B)	5,499,954 (교원 : 4,599,954천원) (직원·조교 : 900,000천원)	6,459,950 (교원: 4,659,950천원) (직원·조교: 1,800,000천원)	959,996*	
비율(C=B/A)	17.1%	20.4%	-	

※ 세입예산액(법 제11조 제3항 제1호) :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교육과정, 공개강좌, 산업체 위탁교육, 전공 심화과정,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,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

* 2016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 증가사유

- 직원 :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1,2학기분 편성 (2015학년도는 2학기분만 편성 운영)